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392

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: 강은미・이은주・장혜영

배진교・류호정・심상정

박홍근 • 이용빈 • 윤영덕

조오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7년 5월 30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,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원 및 수족관이보유한 생물에 적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 따라 시·도지사는 등록된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지도·점검 및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을 할 수 있으나,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도·점검 등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음.

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, 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의 위촉·임명 근거를 신설하며, 허가·허가취소, 지도·점검 및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

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의 제목 중 "등록"을 "허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-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1.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
- 2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을 보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
- 3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,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및 안전관리
- 4. 종사자의 안전·보건 확보
- 5. 휴 ·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
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"(등록의 취소)"를 "(허가의 취소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"를 "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등록을"을 "허가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등록한"을 "허가를 받은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등록요건"을 "허가요건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검사관) ①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·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1.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 물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
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수 행 경력이 있는 자
- 3.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 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자
- 4.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·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
- ②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시설·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는 위촉 절차,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위
- 5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
- 6.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인위적인 행

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행위

제9조제1호 중 "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"을 "제3조제1항 각 호의"로, "목록"을 "현황"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중 "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"을 "허가요건"으로 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관리감독 기준)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 허가, 제4조의 허가 취소, 제11조의 지도·점검 및 제12조의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 중 "등록을"을 "허가를"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제3호"를 "제6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"를 "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7조제4호"를 "제7조제7호"로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
- 2의2.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 개정규정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3조(등록 등)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다. 다만, 제3호 및 제5호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.

- 1. 시설의 명칭
- 2. 시설의 소재지
- <u>3. 시설의 명세</u>
- 4. 시설 대표자의 성명·주소5. 전문인력의 현황
- 6.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

 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

 수의 목록
- 7.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
 고 있는 멸종위기종(「야생
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
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
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
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

제3조(<u>허가</u> 등) ① <u>동물원 또는</u>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
-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
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
- 2. 멸종위기종(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 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 생생물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생물종 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)을 보유하려는 경우해당 생물의 관리

리

기종을 말한다) 및 해양보호 생물종(「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 물을 말한다) 및 그 개체 수 의 목록

- 8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계획, 적정한 서 식환경 제공계획, 안전관리계 획, 휴 ·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
- ② 시·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.
-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 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
- 3.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, 적정한 서식환 경 제공 및 안전관리
- 4. 종사자의 안전 · 보건 확보 5. 휴ㆍ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

-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신청과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(등록의 취소) ① 시·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- 2. 제3조제1항에 따른 <u>등록요건</u>을 갖추지 못한 경우
- 3. (생략)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등록증을 시·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조(허가의 취소 등) ①
<u>허가를 취소하</u>
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
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
지를 명할 수 있다
허가를
1
<u>허가를 받은</u>
2
3. (현행과 같음)
<u><삭 제></u>

제4조의3(검사관) ① 시·도지사 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환경부·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 다)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
하는 자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(이하 "검사관"이라 한다)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1. 국립생물자원관,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
- 2.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·사육·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
- 3.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서 7년 이상 수의업무 경험 이 있는 자
- 4.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운영・관리와 정책에 관한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갖춘 자
- ②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

제5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제5조(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 · 폐원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<삭 제> 한 자는 시 · 도지사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7조(금지행위) 동물원 또는 수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 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의 허가, 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동물 원 및 수족관의 시설・설비 등 을 검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누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 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그 밖에 검사관의 임명 또 는 위촉 절차,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및 휴·폐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	5	(현	행괴	- 같	음)		
제	7조	:(금	·기항	[위)		 	
					- .		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4. (생략)

- 제9조(운영·관리 기록유지 및 지 보존)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1.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│ 1. 제3조제1항 각 호의-----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 록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 역

2. (생략)

제12조(조치명령) ① 시·도지사 제12조(조치명령) ① ------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을 만 지고 먹이를 주도록 하는 행 위
- 5.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행 동을 강요하는 행위
- 6.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생 태적 습성과 관련 없는 인위 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 을 시키는 행위
- 7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제9조(운영·관리	기록유지	및
보존)		

- ----현황-----
- 2. (현행과 같음)

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- 제3조에 따른 <u>등록 또는 변</u>
 <u>경등록사항</u>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
- 2. ~ 4. (생 략)
- ② (생략)

<신 설>

제15조(청문) 시·도지사는 제4조 제1항에 따라 동물원·수족관 의 <u>등록을</u>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벌칙)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

1 <u>허가요건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의2(관리감독 기준) 환경부
장관은 제3조의 허가, 제4조의
허가취소, 제11조의 지도ㆍ점검
및 제12조의 조치명령 등에 필
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,
시 · 도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
한다.
제15조(청문)
허가를
<u>-1/1 ਦ</u>
· 제16조(벌칙) ①
<u>제6호</u>
, -
②

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 성하여 제출한 자
- 2. 제3조에 따른 <u>등록 또는 변</u>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
- 3. <u>제7조제4호</u>에 따른 행위를 한 자
- 4. ~ 7. (생략)

<신 설>

 	 	 _	_	_	_	_	_	_	_	_	_	

- 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
 - 2. ----- 허가 또는 변 경허가를 받지-----
 - 2의2.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• 방해 또는 기피한 자
 - 3. 제7조제7호-----
 - 4. ~ 7. (현행과 같음)